

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(사무직원의 정수) 중 “50명” 을 “55명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